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090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5년 8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복합체육 시설('26.6월 개관예정)로 볼링장, 수영장 등을 활용한 전문·생활 체육프로그램 기획과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시설임.
- 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동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명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시설형)
-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 제1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 필요성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공존, 더욱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다년간의 유사 시설 운영, 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보유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역량이 요구되는 바,
- 서울시를 대표하는 전문체육시설이자 복합체육시설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이 적절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세부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규정 마련
- 서울어울림체육센터(볼링장·수영장·체육관 등)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체육센터 재산 및 기타 물품 등의 보존·유지관리
- 기타 체육센터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위탁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어울림체육센터(연면적 14,780㎡, 지하2 지상3)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1268
- 주요시설 : 볼링장, 수영장, 장애인다목적공간, 체육관, 주차장 등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수락산역 인근)



시설 조감도

-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6. 1. 1. ~ '28.12.31.), 신규 위탁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서울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공동 수의협약
- 사. 소요예산(안) : 3,320백만원
 - (민간위탁금) 인건비 1,762백만원, 사업·운영비 1,558백만원
 - ※ '26년 예산과 제출안 기준으로 향후 변동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각호와 같다.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 제18조의2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편성 중

다. 합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25.7.11.)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25년 제6차 심의)

○ 향후 계획

- 시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 협약체결 : ~'25.12월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준공 : ~'26.3월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개관 및 운영 : '26.6월 예정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1)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전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형 체육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이하 “어울림센터”라고 한다)는 2026년 6월 개관 예정이며, 총 사업비 772억 3천4백만원이 투입되었음(노원구 상계동 1268번지, 연면적 14,780㎡).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공간 현황 >

구 분	주요시설	면적(㎡)
합 계		14,779.98
3층	다목적체육관	1,328.95
2층	장애인다목적공간(4개실), 재활치료실, 체력측정실, 프로샵, 탈의실, 샤워실, 직원휴게실, 사무실, 실외주차장(12대)	1,389.48
1층	수영장(10레인), 편의점, 안내센터	2,999.11
지하1층	볼링장(32레인),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실, 주차장(13대)	4,500.98
지하2층	주차장(141대), 공용공간(화장실 포함)	4,561.46

- 어울림센터는 볼링장, 수영장, 다목적공간, 체육관 등의 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며, 해당 시설에서의 프로그램 및 대회 유치를 주요 사업으로 계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확하고 있고, 총 36명의 조직과 인력 구성(센터장 1명, 시설운영과 17명, 시설관리과 18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어울림센터의 세부 운영계획에는 복지, 전문·생활 체육, 편의 시설,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주요 사업 내역 >

구 분	운영 내용
복지 강화를 위한 특화 공간 운영	· 장애인 다목적 공간(4개실), 재활치료실, 체력측정실 · 운동 처방을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건강 관리를 지원
전문·생활 체육 공간	· 국제규모 볼링장(32레인), 수영장(10레인), 다목적 체육관 · 강습, 대관, 자유허용, 대회 등 복합적인 형태로 운영
생활 편의 제공	· 편의점, 프로샵, 무인 카페 (옥상 정원 등) · 편의성을 제공하고 수익 창출을 위한 유휴 공간을 활용
주차 공간	· 지하 1층(13대), 지하 2층(141대), 실외(12대) / 총 166면 · 대회, 단체 이용객, 휠체어 이용자 등을 고려 탄력적인 운영
편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시스템 구축 및 통합 관리 용역 · 무인 키오스크 및 모바일 기반 개인 이용객 예약 시스템 구축 · 기계 및 설비 관리 용역 등

- 운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복지 강화 부분에 있어 운동 처방을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건강 관리 지원을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재활 운동 프로그램, ▶체력 측정 서비스, ▶건강 증진 교실, ▶운동 처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또한 전문·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볼링장과 수영장 모두 일부 공간은 장애별 편의성(Barrier Free)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위한 어울림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보치아, 배드민턴, 체조 등 체육 종목에 대해서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을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위탁		
위탁유형	시설형	구분	신규위탁(수의계약)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예정기간: 2026. 1. 1.~ 2028. 12. 31.)		
사업목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형 복합체육공간 조성	수혜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사무내용	○ 위탁사무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세부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규정 마련 - 서울어울림체육센터(국제대회 규격 볼링장, 수영장, 체육관 등)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체육센터 재산 및 기타 물품 등의 보존, 유지관리 - 기타 체육센터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위탁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규정 마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운영방향 및 콘셉트 마련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운영규정 마련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운영 개시 준비 - 운영조직 구성, 인력 채용, 자산 구매 등 운영 기반 마련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홍보, 개관식 개최, 홈페이지 구축 등 사전 준비 ○ 서울어울림체육센터(볼링장, 수영장, 체육관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장애인·비장애인 대상 볼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 국제대회 및 각종 대회 유치를 고려한 볼링장 운영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 ○ 기타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소요예산(안) ※협약시작 당해연도 기준	○ 총세입세출예산 : (세입) 843,800천원, (세출) 3,239,916천원 ※ 시설형 위탁 - (세입) 이용수입, 임대수입, 기타수입 등 - (세출) 인건비, 인건비성경비, 고정비, 예비비 등		

-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수의협약의 당사자로는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두 기관의 공동수탁 운영하고자 함.

민간위탁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해야 함이 바람직하지만 장애인-비장애인 간 사회통합과 포용적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법령 범위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에는 수의계약 시 수탁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하게 되어있으므로 관광체육국은 위·수탁 체결 전까지 해당 평가를 마무리하여 수의협약 기관이 해당 민간위탁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임.
- 동 민간위탁 건은 올해 실시된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적정’ 심의 결과를 받은 바 있음.

다만 조직담당관은 ‘적정’ 결과의 단서로 실제 운영에 있어 ▶장애인용 프로그램과 장애-비장애인 함께하는 프로그램 비중 확대, ▶주 이용자인 장애인을 위한 명확한 사업목적과 이용가이드 마련을 권고하였음.

- 이는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성인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볼링 및 수영의 경우에는 비장애인 강습이 대부분 수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임.

그러므로 관광체육국은 어울림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서, 각종 프로그램 등 시설 운영에 있어 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 시 이러한 요인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관광체육국이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를 살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복합체육시설로 해당 특성에 대한 전문성 필요, ▶체육시설 관리·운영 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이 합당하다 판단하고 있음.
- 어울림센터의 경우 강습료 등 수익이 발생하므로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전 원가계산을 통해 위탁유형을 결정하고 위탁경비를 산출해야 함에도 동의안 제출 시까지 원가계산을 시행하지 않음. 다만 관광체육국은 수탁 예정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26년도에는 수입 8억 4천3백만원과 지출 32억 4천만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가계산은 위탁기간 동안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파악함으로써 초과수입은 세입으로 초과지출은 위탁료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원가계산을 마무리하여 어울림센터에 대한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추계하여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